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7
----------	-----

2019년 2월 2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12월 21일, 김태수 의원 발의

나. 회부일자 : 2018년 12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2월 25일 상정·수정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태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을 60% 이내로 하고 위원회 위촉 해제와 제척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을 60% 이내로 규정함(제2조제4항 신설)
-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을 규정함(제2조의2 신설)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함(제2조의3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 조치 :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을 60% 이내로 하고 위원회 위촉 해제와 제척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안 제2조제4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으며,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한편, 현 위원회는 18명(당연직 2명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 중 남성 위원은 9명으로 56.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위원 조정은 필요하지 않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계	당연직	위촉직		
		소계	남성	여성
18명	2명	16명(100%)	9명(56.3%)	7명(43.7%)

- 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제8조의2)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제7조제1항제4호)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안 제2조의2 중 ‘위촉 해제’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종전에는 ‘해촉(解屬)’을 ‘위촉 해제’로 썼지만, 위촉 해제 또한 용어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해촉을 사용하고 있어 ‘해촉’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2017년 12월 개정(8판)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분쟁대상자가 신청한 안건을 “사건”으로 명칭하고 있고 접수 건에 대해서도 순번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데 “사건번호1)”라 쓰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에서도 “사건”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안 제2조의3 조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개 정	수 정(안)	비 고
위촉 해제	해촉	안 제2조의2
해당 심의·자문 ~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 ~	제2조의3제1항
해당 안건의 ~	해당 사건의 ~	제2조의3제2항

1) 예) 사건번호 : 서울환조19-3-1

## [참고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경분쟁 조정법」

제10조(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 7. (생략)

② (생략)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환경분쟁 조정법」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건”이란 용어를 신설되는 안 제2조의3 조문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7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5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환경분쟁 조정법」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건”이란 용어를 신설되는 안 제2조의3 조문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2. 주요 골자

- 안 제2조의2 조 제목 및 각 호의 부분 중 “위축 해제”를 “해축”으로 함.
- 안 제2조의3 중 “안건”을 “사건”으로 함.

## 3. 참고사항 : 생략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2 조 제목 중 “위축 해제”를 “해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의 부분 중 “위축 해제”를 “해축”으로 한다.

안 제2조의3제1항 본문 및 각 호 중 “해당”을 “해당 사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안건의”를 “해당 사건의”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2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li> <li>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li> </ol>	<p>제2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5. (개정안과 같음)</p>

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심의·자문 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 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 또는 위원의 회피 신  
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  
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 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하는”을 “소집하려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li> <li>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li> </ol>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사건의 심의·자문 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중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략)

제4조(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중재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중재위원회 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② -----  
----- 소집하려는 -----  
-----  
-----  
-----  
-----  
-----  
-----  
-----

③ (현행과 같음)